과천도시공사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20. 2. 5. 지침 제28호
개정 2022. 9.30. 지침 제58호
개정 2024. 1.31. 지침 제76호
개정 2025.11.20. 지침 제95호
개정 2026.09.21. 지침 제109호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과천도시공사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과천도시공사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며 아래와 같이 보직에 따른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을 대행사업본부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9.30., 2024.1.31., 2025.11.20., 2026. 9. 21.)
2. 부위원장은 시설관리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처장·실장으로 한다.(개정 2022.9.30., 2024.1.31.)

제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절약추진부서의 에너지절약추진담당 부장으로 한다.(개정 2024. 1. 31.)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두며 서기는 에너지절약추진 담당자로 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대책 수립
2. 에너지절약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3. 문제점 해결을 위한 관련부서 간 의견조정
4. 기타 에너지 절약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이를 사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업무관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시설관리부에서 관장한다.

제10조(재정)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비, 조사비, 여비, 수당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22. 9. 30. 지침 제58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5. 11. 20. 지침 제95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6. 9. 21. 지침 제109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심의의결서 (제8조 관련)

회 차	제 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건 명	
의결내용	

위와 같이 의결하고 이에 서명함.

년 월 일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부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별지 제2호서식]

0000년 00월 00일 제0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회의록 (제8조 관련)

진 행(발언자)	토의내용

[별지 제3호서식]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부의안건 (제8조 관련)

제 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의 제	
제안(자)부서	
제안내용	
참고사항	